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한시적 허가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법률명 및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제2항제2호 중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 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u>함은 법 제17</u> <u>조제1항제11호의</u> 사항을 말한 다. <u><신 설></u> <u><신 설></u>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 관변경) ----- ----- ----- <u>함은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u>1.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u> <u> 항</u> <u>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u> <u> 정하는 사항</u>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 액하여 갱신하는 <u>사항(2025년</u> <u>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u> <u>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u> <u>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u>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사항</u>

다) ③ (생 략)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u>시장·군수·구청장은</u>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시장·군수·구청장은</u>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